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2월 15일 서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8일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99. 12.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 영 자)

가. 제안이유

- 보건소에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와 분만개조를 위해 운영해온 분만실이 이용률 저조로 '94. 3. 24일 자로 기 폐지되었으나
- 현행 조례상에 이와 관련된 규정(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이 정비되지 않아서 금회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입원서약서) :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와 분만개조를 위해 운영해온 분만실이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미 '94. 3. 24일 자로 폐지되어,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제8조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조문배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입원서약서)을 삭제하자는 내용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보건소의 분만실을 폐지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보건소의 분만실은 이미 '94. 3. 24일 자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은 응급환자 후송체계 기능보강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원 및 사무조정 등 관련규칙 등이 '94. 3. 21일 자로 정비된 바 있으나, 그 동안 조례개정에 방치함으로써 분만실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조례는 현존하되 사회현실을 규율하지 못하는, 즉 규범과 현실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앞으로 규범과 현실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의 시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봄.

다음 개정조례안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조문순서를 배열하고 있으나, 조례안 심의의 적정성과 조례개정의 역사적 인식, 동일 내용의 조례를 적용조문을 달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 등을 감안한다면, 제9조 내지 제12조를 조문순서를

재배열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년 11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소에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와 분만개조를 위해 운영해온 분만실이 이용률 저조로 '94. 3. 24일 자로 기 폐지되었으나
- 현행 조례상에 이와 관련된 규정(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이 정비되지 않아서 금회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입원서약서) : 삭제

3.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 보건6550-289('94. 2.23)호, 서구보건소 분만실 폐지에 따른 정원 및 사무조정(안)
- 기감12200-356('94.3.21)호, 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 외 2건 공포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개정 1988. 9. 13 조례 제93호

1989. 12. 1 조례 제139호

1995. 10.24 조례 제346호

1996. 12. 3 조례 제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제14조에 의거 광역시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2.3)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사회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기타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개정'89.12.1, '95.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